##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종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696

발의연월일: 2025. 4. 10.

발 의 자:윤종군·강득구·진성준

서영석 • 복기왕 • 소병훈

김주영 • 홍기원 • 전현희

김태년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 부장관 등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,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권고 또는 건의한 재발방지대책 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지난 시흥 교량 거더 붕괴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위원회의 재 발방지대책이 수립된 지 8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은 저 조한 상황임. 최근 발생한 안성 교량 거더 붕괴사고 원인으로 시흥 교 량 거더 붕괴사고 당시 지적되었던 원인들이 마찬가지로 제기되며 재 발방지대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.

이에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조치 결과를 6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여 재발방지대책의 시의성있 는 이행에 기여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68조제4 항 등).

법률 제 호

##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국 토교통부장관, 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의 장, 그 밖의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권고 또는 건의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개 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8조(건설사고조사위원회)	) 제68조(건설사고조사위원회) ①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④ 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
	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를 받
	은 국토교통부장관, 발주청 또
	는 인ㆍ허가기관의 장, 그 밖의
	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
	치 결과를 건설사고조사위원회
	가 권고 또는 건의한 날부터 6
	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
	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
	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
	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
	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
	<u>할 수 있다.</u>
<u>④·⑤</u> (생 략)	<u>⑤</u> ・ <u>⑥</u> (현행 제4항 및 제5항
	과 같음)